

서울특별시 사회적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이준형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560
----------	------

발의년월일 : 2020년 5월 25일
발 의 자 : 이준형, 유 용, 송아량,
이태성, 이호대, 채인묵,
홍성룡, 전병주, 양민규,
김인호, 권영희, 김경우,
김태호, 김화숙, 이승미,
봉양순, 추승우 의원(17명)

1. 제안 이유

- ‘사회적농업’은 농업의 기능을 활용해 노인·장애인, 한부모가족 등 사회 취약계층에게 교육·돌봄·고용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이를 통해 궁극적으로는 사회 통합·혁신 등의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는 것임.
- 최근 문재인 정부가 내놓은 100대 국정과제에 ‘사회적농업’이 포함되면서 주목받았지만, 현재 법제화나 논의가 충분히 되어있지 않으며 서울과 같은 대도시의 특성을 반영하고 있지 못한 상황임.
- 따라서 서울의 지역별 특성을 고려한 도시농업 활동을 사회적농업에

포함하는 한편, 사회적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마련하여 지역사회의 문제를 해결하고,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 가. 사회적농업을 정의함(안 제2조).
- 나. 사회적농업의 육성과 발전에 관한 시장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3조).
- 다. 사회적농업의 육성과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4조, 안 제5조).
- 라. 사회적농업의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6조).
- 마. 사회적농업 심의위원회 설치 및 구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7조, 안 제8조).
- 바. 사회적농장의 지정 및 취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9조).
- 사. 사회적농업의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0조).

3. 참고 사항

- 가. 관계법령 : 해당사항 없음
-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참조
- 다. 기 타 :

서울특별시 사회적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업의 기능을 활용하여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과 공동체 활성화 등을 도모하기 위해 사회적농업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회적농업”이란 농업 또는 도시농업 활동을 통하여 취약계층에게 돌봄, 교육, 고용, 치유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활동 및 실천을 말한다.
2. “취약계층”이란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취약계층을 말한다.
3. “사회적농장”이란 사회적농업을 영위하는 농장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서울특별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역별 특성을 고려하여 사회적농업의 육성과 발전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마련하고 시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기본계획 수립) ① 시장은 사회적농업의 육성과 지원에 관하여 서울특별시 사회적농업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

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회적농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한 기본방향
2. 사회적농업 관련 연구, 실태조사, 홍보방안
3. 사회적농업 관련 교육 및 인력양성
4. 사회적농업 관련 민·관 협력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사회적농업의 육성 및 지원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시행계획의 수립·시행) ① 시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서울특별시 사회적농업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전년도 시행계획의 추진실적과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을 서울특별시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6조(실태조사) ① 시장은 사회적농업 활성화를 위하여 매년 사회적농업의 현황, 지역 여건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실태조사 결과는 사회적농업 기본계획 수립 시 반영하여야 한다.

제7조(사회적농업 심의위원회 설치) ① 시장은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사회적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계획 수립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사회적농업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사회적농업에 관한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등에 관한 사항
2. 사회적농업 육성 정책과 관련된 관련 기관과의 협의 및 조정에 관한 사항
3. 사회적농업 추진실적의 점검 및 평가에 관한 사항
4. 사회적농장의 지정 및 취소 등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사회적농업의 육성 및 지원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하되 사회적농업 관련 국장은 당연직으로 한다.

1. 사회적농업 관련 기관·단체에 근무하는 사람
2. 사회적농업 전문가로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서울특별시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 의원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차례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위원은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 중 시의회 의원은 위촉 당시에 소속된 상임위원회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위원 구성은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같은 항 단서에 따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위원회의 사무 총괄 및 회의록 작성을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두되,

간사는 위원회를 주관하는 부서의 담당관이 되고 서기는 사무관이 된다.

⑥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따른다.

제9조(사회적농장의 지정 및 취소) ① 시장은 사회적농업의 활성화 및 사회적농장을 이용하는 취약계층 보호를 위하여 사회적농장을 지정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사회적농장 지정과 취소 등의 세부적인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10조(재정지원) 시장은 사회적농업의 발전과 활성화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사회적농업 확산과 사회적농장 운영에 필요한 인력 양성 사업
2. 사회적농업에 대한 이해와 관심을 높이기 위한 홍보사업
3. 사회적농장에 대한 경영·기술·세무·노무·법률·회계 등의 자문 및 정보제공
4. 사회적농장의 시설개선, 협력관계 구축, 취약계층의 활동보조 사업
5. 사회적농장에서 생산한 농산물 및 가공품의 판매촉진을 위한 행사 및 마케팅 활동에 대한 지원사업
6.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치유농업 관련 사업

7. 그 밖에 사회적농업의 육성과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1조(포상) 시장은 사회적농업 육성에 이바지한 공로가 현저한 기관·법인·단체 및 개인 등을 선정하여 포상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사회적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 서울특별시 사회적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제6조(실태조사), 제7조(사회적농업 심의위원회 설치), 제10조(재정지원)에 따라 비용 발생

※ 제4조(기본계획 수립) 및 제5조(시행계획의 수립·시행)는 담당부서에서 직접 계획을 수립하고, 제11조(포상)는 별도 부상 없이 표창장 수여로 비용추계 대상에서 제외

2. 미첨부 근거 규정

「서울특별시 의안의 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2항

3. 미첨부 사유

가.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억원 미만인 경우(제3조제1항제1호)

나. 추계결과 = 2,398,000천원(연평균 479,600천원)

○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479,600천원임

○ 추계의 전제

- 비용은 2021년부터 발생하고 추계기간(2021~2025년) 이후에도 계속 발생
- 사회적농업 심의위원회를 15명(시의원 1명, 담당국장 1명, 민간위원 13명)으로 구성하고 연 4회(정기 2회, 임시 2회) 개최하는 것으로 전제
- 제10조(재정지원)는 현재 사회적농업 지원사업을 시행중인 충청남도의 2020년 ‘사회적농업 활성화 지원’ 사업의 수(7개소) 및 단가(60백만원)를 참고하여 서울시 자체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전제

다. 상세 비용추계 결과

○ 총비용 = 2,398,000천원(연평균 479,600천원)

- 총비용 = 실태조사 + 위원회 운영비용 + 재정지원

(단위 : 천원)

구분		연도	2021	2022	2023	2024	2025	계
세입	-		-	-	-	-	-	-
	소계(a)		-	-	-	-	-	-
세출	실태조사 (제6조)		50,000	50,000	50,000	50,000	50,000	250,000
	사회적농업 심의위원회 (제7조)		9,600	9,600	9,600	9,600	9,600	48,000
	재정지원 (제10조)		420,000	420,000	420,000	420,000	420,000	2,100,000
	소계(b)		479,600	479,600	479,600	479,600	479,600	2,398,000
□ 총 비용(b-a)			479,600	479,600	479,600	479,600	479,600	2,398,000

○ 실태조사 : 연간 비용 50,000천원 × 5년 = 250,000천원

※ 연간 실태조사 비용 : 유사 농업 실태조사인 도시농업과의 2020년 ‘도시농업 실태조사’ 예산 50,000천원 적용

○ 위원회 운영비용 : 참석수당 39,000천원 + 업무추진경비 9,000천원 = 48,000천원

- 참석수당 : 수당단가 150천원 × 13명 × 연 4회 × 5년 = 39,000천원

※ 참석수당 단가 : 「서울특별시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 시행규칙」 제2조(수당의 종류 및 지급액)에 따라 2시간 초과 150천원 적용

※ 지급인원 : 위원 15명 중 시의원(1명) 및 담당 국장(1명)은 제외

- 업무추진경비 : 경비단가 30천원 × 15명 × 연 4회 × 5년 = 9,000천원

※ 업무추진경비 단가 :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사교·의례 등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경조사비 등의 가액 범위) [별표1] 음식물 경조사비 선물 등의 가액 범위(제17조 관련)에 따라 3만원 수준으로 적용

○ 재정지원 : 개소당 단가 60백만원 × 7개소 × 5년 = 2,100,000천원

※ 개소당 단가 및 개소수는 현재 사회적농업 지원사업을 시행중인 충청남도의 2020년 ‘사회적농업 활성화 지원’ 사업의 수(7개소) 및 단가(60백만원)를 참고

4. 작성자

시의회사무처 예산정책담당관

담 당 관 남승우

조사분석팀장 여차민

예산분석관 박주용

☎ 02-2180-7943

e-mail : pjooyong@seoul.go.kr